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피해자에게 통지 등〉
■ 김기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215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병 섭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피해자에게 통지 등	3
2. 가석방 등·집행유예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피해자 통지 준용 · 8	
3.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받은 스토킹행위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피해자 에게 통지 등	11
4. 벌칙	16
5. 부칙	19
※ 참고. 전자감독 피해자보호시스템 절차도	2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기표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5. 9. 24.
3. 회 부 일 : 2025. 9.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토킹범죄로 인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고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 또는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이하 ‘피부착자등’이라 한다)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거나 수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이에, 피부착자등이 피해자에게 접근 시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도 직접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신자료를 피해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의2, 제16조제2항제5호, 제31조의6제4항단서, 제31조의8제2항제5호 신설 등).

III. 검토의견

1.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피해자에게 통지 등

개정안은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특정인에의 접근 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현저히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 등 특정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사실을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고(안 제15조의2), 이를 위한 수신자료¹⁾ 열람·조회·제공·공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5호).

현 행	개정안
<u><신 설></u>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① (생략) ②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조회·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제15조의2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가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현저히 위반할 우려가 있어 피해자 등 특정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이하 “수신자료”라 한다)를 보존하여야 한다.

현 행	개정안
1. ~ 4. (생 략) <u><신 설></u> ③ 삭 제 ④ ~ ⑦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u>보호관찰소의 장이 제15조의2에 따라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u> ④ ~ ⑦ (현행과 같음)

- 법무부는 2020년 2월부터 전자장치 피부착자와 성범죄 등 피해자 간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전자장치 피부착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일정거리 내로 좁혀질 경우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그 지역을 벗어나도록 개입하는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운영을 시작 하였음.²⁾
-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도입 이전까지는 “피해자 등 특정인 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³⁾을 부과받은 전자장치 피부착자에게 피해자의 거주지, 직장 등 주 생활근거지와 일정 반경을 접근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후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해당 지역에 접근하면 이를 제지하는 형태로 운영하였음.

2)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가 범죄피해자를 24시간·365일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2020. 2. 24.

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 2의2. 주거지역의 제한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4.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5.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6.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러나, 해당 방식은 피해자가 외출 등 생활 근거지를 벗어날 경우 상호간 근접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 피해자 중 희망자에게 배부한 스마트워치 형태의 피해자 보호장치를 통해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피해자의 위험반경 내로 이동할 경우 보호관찰관 등이 개입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음.

다만, 당시에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와 피해자 상호간 근접사실을 피해자에게 먼저 알릴 경우 피해자에 과도한 두려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특별한 경우 외에는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운용되었음.

- 그런데,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2020년 2월 처음 도입된 이후 2023년 11월까지 위해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그 효과가 입증되고⁴⁾,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내용⁵⁾을 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2024년 1월 시행

4)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스토킹 행위자 접근 효과적 차단”, 2023. 11. 20.

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됨에 따라, 법무부는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문자 전송하는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피해자가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피해자 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등의 개발을 통해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운영을 강화하였으며, 이는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⁶⁾ 피해자와 스토킹 행위의 피해자에게 모두 적용되고 있음.

이에, 안 제15조의2는 현재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피부착자와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운영되고 있는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관리·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가 차원의 범죄피해자 보호 책무를 보다 명확히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실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법무부가 2024년 5월 실시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운영 결과 조사에서 피해자 위해 사례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보복범죄 차단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⁷⁾

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7) 법무부 보도자료,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운영’ 시행 후 4개월 간 위해 사례 0건”, 2024. 5.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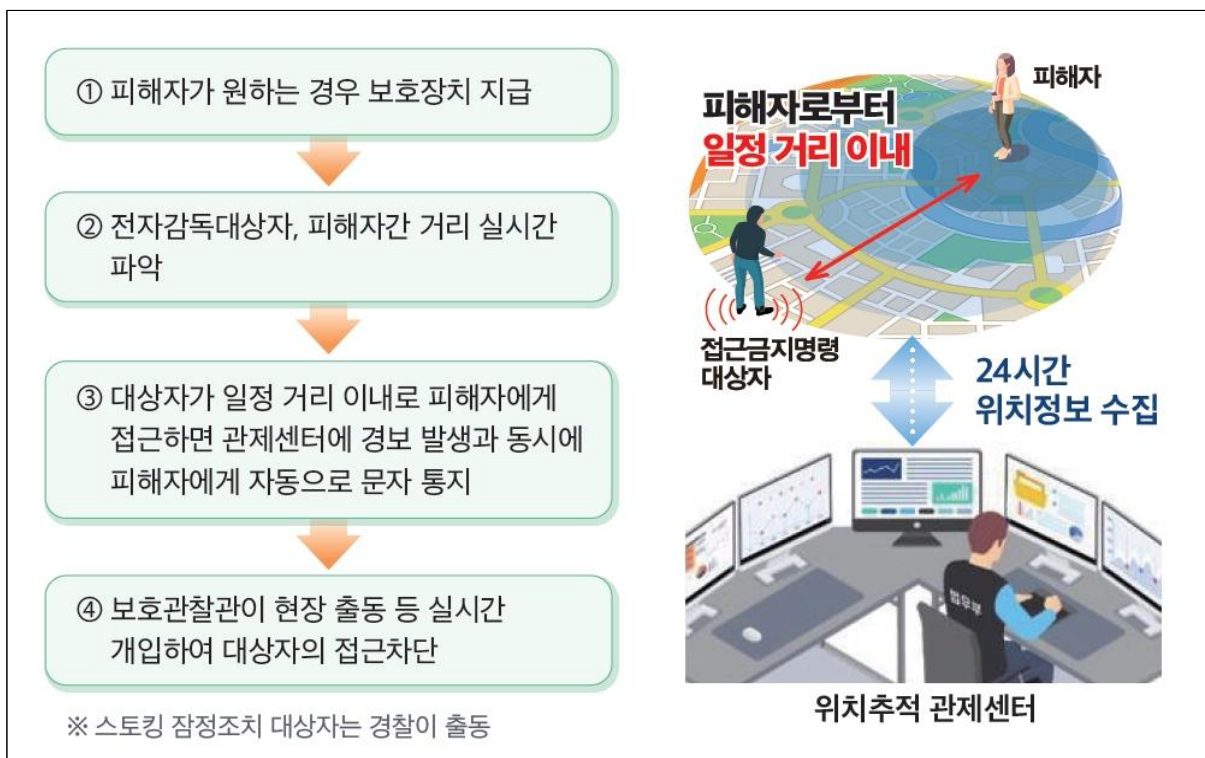
- 참고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도입 이후의 현재까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음.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이용자 현황>

연도	특정범죄 피해자	스토킹행위 피해자	계
2024	66	79	145
2025. 9.	103	164	267

자료 : 법무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개요⁹⁾>



자료 : 법무부

8) 2025. 9. 기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 부과자는 1,646명임

9) [참고자료]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절차도

2. 가석방 등·집행유예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피해자 통지 준용

개정안은 가석방 등 및 집행유예로 인한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현저히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수신자료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준용하는 내용임(안 제27조 및 제31조).

현 행	개정안
제27조(준용)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제6항제1호·제8항제1호·제9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준용) ----- ----- ----- 제 15조, 제15조의2----- ----- -----.
제31조(준용)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4항·제6항제1호·제8항제1호·제9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제31조(준용) ----- ----- ----- ----- ----- 제15조제1항, 제15조의2 ----- -----.

- 현행법 제3장은 가석방, 치료감호 가종료 등이 되는 자가 보호관찰을 받게 될 경우 해당 기간의 범위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¹⁰⁾

1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22조(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 ①제9조에 따른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 범죄자로

헌행법 제4장은 법원이 특정범죄¹¹⁾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 보호관찰 기간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²⁾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3호¹³⁾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으로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사위원회는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 예정자의 범죄내용, 개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석방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가중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범죄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중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이하 “가중료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 1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 1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제28조(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①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1.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2.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 금지
3.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4.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5.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6.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7.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8.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10.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제15조의2와 같이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현저히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는 내용을 도입하는 경우,

유사한 내용의 보호관찰법상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게 되는 가석방 등 및 집행유예로 인한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할 경우 이 사실을 피해자 등에게 알릴 수 있도록 준용 규정을 두어야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위반에 대한 실효적인 대처가 가능해 질 것이고, 이를 통해 보복범죄 등의 위해로부터 보다 두텁게 피해자 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3.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받은 스톱킹행위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피해자에게 통지 등

개정안은 잠정조치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 등에게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수신자료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31조의6제4항 및 안 제31조의8제2항제5호), 이와 관련된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사용·열람·조회·제공·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31조의8제5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의6(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① ~ ③ (생략)	제31조의6(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톱킹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④ ----- ----- ----- ----- ----- .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31조의8(스톱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① (생략)	제31조의8(스톱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스톱킹행위자 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조회·	② ----- -----

현행	개정안
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1. ~ 4. (생략) <신설> ③·④ (생략) <신설>	-----. 1. ~ 4. (현행과 같음) 5. <u>보호관찰소의 장이 제31조의6제4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u> ③·④ (현행과 같음) ⑤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사용·열람·조회·제공·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의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 등의 주거등¹⁴⁾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과 같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⁵⁾.

- 1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1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한 이유는 잠정 조치 중 ‘피해자 등의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 등의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 조치가 함께 부과되어야만 도입취지가 달성될 수 있으므로¹⁶⁾ 「스토킹처벌법」 제9조제2항¹⁷⁾은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를 병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은 스톱킹행위자가 잠정조치 기간¹⁸⁾ 동안 ‘피해자 등의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¹⁹⁾

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16) 제21대국회 제400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록, p.8., 2022. 10.

1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1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⑦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이하 이 장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로 전자장치의 부착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문의 등본을 스톱킹행위자의 사건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이하 이 장에서 “관할경찰관서”라 한다)의 장과 스톱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이하 이 장에서 “보호관찰소”라 한다)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톱킹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장치 부착을 거부하는 경우
2. 잠정조치 기간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잠정조치 기간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를 위해 수신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톱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한 이후인 2024년 1월부터 이미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잠정조치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스톱킹 행위자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문자 전송하는 등의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안 제31조의6제4항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10월 최초 시행된 이후 스톱킹 범죄 발생 건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 스톱킹범죄가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측면을 감안할 때 스톱킹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스토킹범죄 발생 및 조치 현황>

연도	발생 건 수	검거 건 수	구속인원	불구속인원
2021	1,023	880	58	760
2022	10,545	9,895	331	9,668
2023	11,992	11,520	353	11,239
2024. 10.	10,881	10,348	-	-

자료 : 2025 치안전망(경찰청)

-
4. 그 밖에 잠정조치의 이행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다만, 체계자구적 검토사항으로 「스토킹처벌법」 제9조제1항제2호²⁰⁾의 잠정조치에 따른 접근 금지 대상에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 포함되므로 안 제31조의6제4항 단서에 “피해자”를 “피해자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한편, 안 제31조의8제5항은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형 집행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를 받은 피부착자의 경우에도 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²¹⁾하고 있고, 해당 대통령령은 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에 관한 절차적·기술적인 사항 등을 규정²²⁾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20)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신자료의 보존·사용·열람·조회·제공·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의2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23조의10(잠정조치 결정문의 송부) 법원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결정문의 등본을 송부하기 전에 팩스·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본을 먼저 송부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이하 이 장에서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라 한다)의 사건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이하 이 장에서 “관할경찰관서”라 한다)의 장

2.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제23조의11(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의 신고) ~ 제23조의19(준용규정) (생략)

4. 벌칙

개정안은 형 집행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가석방 등 및 집행유예로 인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피부착자와 잠정조치로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스토킹행위자의 수신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이를 본래의 목적 외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임.

현 행	개정안
제36조(벌칙) ① ~ ③ (생략) <u><신설></u>	제36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6조제2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1조의8제2항에 따라 수신자료(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사람이 본래의 목적 외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된 전자파 수신자료가 포함하는 정보는 피부착자의 위치정보라고 볼 수 있는데, 위치정보²³⁾는 다른 정보와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개인의 종교, 대인관계,

2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測位)된 것을 말한다.

취미, 자주 가는 곳 등 주요한 사적 영역을 파악할 수 있어 위치 정보가 유출 또는 오·남용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²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등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법에서 정한 목적외로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²⁵⁾ 위치정보에 해당하는 수신자료를 법에서 정한 목적 외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 제36조제4항과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법정형은 5년이하의 징역

24)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

2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한 자
3.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제2항·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동意的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5.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6. 제29조제1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의 적정성에 대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체계자구적 검토사항으로 현행법의 가석방 등 및 집행유예 등으로 인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준용규정인 제27조, 제31조는 수신자료의 열람·조회·제공·공개 사유인 제16조제2항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안 제36조제4항은 “제16조제2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36조제3항²⁶⁾은 수신자료를 관리하는 자가 제16조제2항을 위반한 때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처벌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제36조제3항의 기존 “제16조제2항”을 “제16조제2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2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 ③수신자료(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포함한다)를 관리하는 자가 제16조제2항 또는 제31조의8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 및 제31조의6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착명령 또는 잠정조치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수신자료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5호 및 제31조의8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착명령 또는 잠정조치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벌칙 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2항 또는 제31조의8제2항에 따라 제공된 수신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 안 부칙 제2조와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 범죄를 저질러 부착명령이 집행 중인 사람 또는 스토킹행위로 인해 잠정조치가 집행 중인 사람의 접근금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이들의 수신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임.

문 의 처

02-6788-5065

◇ 운영 방식

